



소규모 산림형

수목장림 조성 매뉴얼

2021. 6.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Korea Woodland Burial Foundation

목 차 | CONTENTS

I. 개 요	1
1. 수목장림 조성배경	2
2. 수목장림과 수목형자연장지	3
3. 소규모 산림형 수목장림 이란?	4
4. 소규모 산림형 수목장림 이점	5
II. 조성 절차 및 신고사항	7
1. 조성절차	8
2. 첨부서류	14
3. 위탁대행	15
III. 조성 모델	17
1. 대상지선정	18
2. 조성 모델	21



IV. 추모목 선정	35
1. 추모목의 선정 기준	36
2. 주요 추모목	37
V. 유지 및 관리	39
1. 수목장 절차	40
2. 표지(명패)설치 기준	41
3. 편의시설(선택사항)	41
4. 유지 및 관리	42
VI. 부 록	47
□ 설치기준	48
□ 신고서 작성요령(작성 예시)	50



소규모 산림형
수목장림 조성 매뉴얼

CHAPTER I

개 요

I. 개 요

1. 수목장림 조성배경

- 전국 묘지면적은 국토의 1%에 해당하는 10만ha로 이는 전국 주택면적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900ha의 묘지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편리성 선호,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¹⁾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안치공간이 부족합니다.
- 이에 따라 수목장림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 ▶ 한국갤럽 조사 결과(2021.3)²⁾ 10명 중 6명이 수목장을 선호
- 수목장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장묘제도로서,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섭리를 몸소 실천하는 길입니다.

1)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2021년 2월 화장률은 90.4%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 2월 88.9%보다 1.5%증가했다.

2)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2021.3), 수목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2. 수목장림과 수목형자연장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기준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 **자연장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 ▶ **수목장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여기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산림**이란 다음과 같습니다.(단,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 ▶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 ▶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 ▶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임도(林道)”]
 -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 수목장림 외 수목을 활용하여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수목형 자연장지**라 합니다.

3. 소규모 산림형 수목장림 이란?



비임야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점순의 채취원(採取園)
-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소규모 산림형 수목장림 이점

- 자연 친화경적인 장묘방법
 - 산림 내 조성되는 수목을 활용한 자연장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분이 함께 향유하는 구역으로 생활문화공간 가까이 조성 가능하며, 고인 곁 사색을 통한 몸과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 저렴하고 자유로운 조성·관리 비용
 - 자연으로 돌아가는 회귀정신을 바탕으로 산림과 산림 주변에 조성되어 매장에 비하여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과 영속성이 있습니다.
 - 고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수목 등으로 조성이 가능하며, 꽃과 열매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 별초 등 관리가 필요 없어, 후손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자연 보존
 - 좁은 면적에 조성가능하며, 산림과 동화되어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산림형
수목장림 조성 매뉴얼

CHAPTER II

조성 절차 및 신고사항

II. 조성 절차 및 신고사항

1. 조성절차

- 수목장림 및 자연장지 조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조성에 따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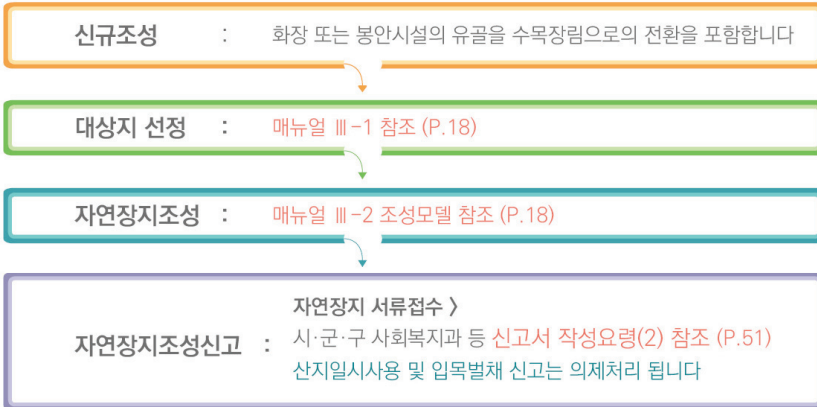
구 분		개인·가족		종중·문중		
조 성 신 고	조 성 자	개인	가족	종중	문중	
	조 성 시 기	사후신고 (30일 이내)	사전신고			
	허 가 권 자	시장·군수 등(사회복지과 등)				
	처 리 기 간	7일	10일			
	조 성 면 적	100㎡ 미만		2,000㎡ 이하		
	개 소 수	1개소		1개소		
	조 성 형 태	임야-수목장림, 비임야-수목형 자연장지				
기타 추가 서류	산지일시사용신고	조성신고 시 제출				
	입 목 별 채 신 고	×		○(100㎡ 이상)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시 공고절차(개장신고 전)

구분	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 경우 (유연묘)	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모를 경우 (무연묘)
서식	신고	허가
방식	알림(통보)	공고
기간	3개월	3개월
횟수	1회	2회(1차공고 후 40일지나 2차공고)
방법	문서로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림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조치	연고자가 이장	화장 → 10년간 봉안 → 자연장

※ 개장신고는 개인, 가족, 종중·문중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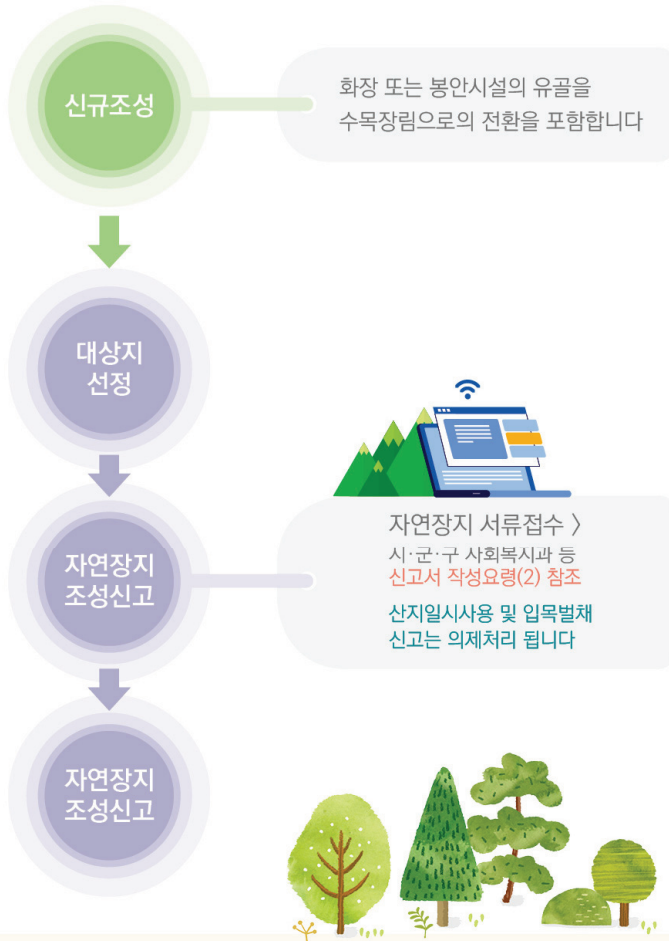
가.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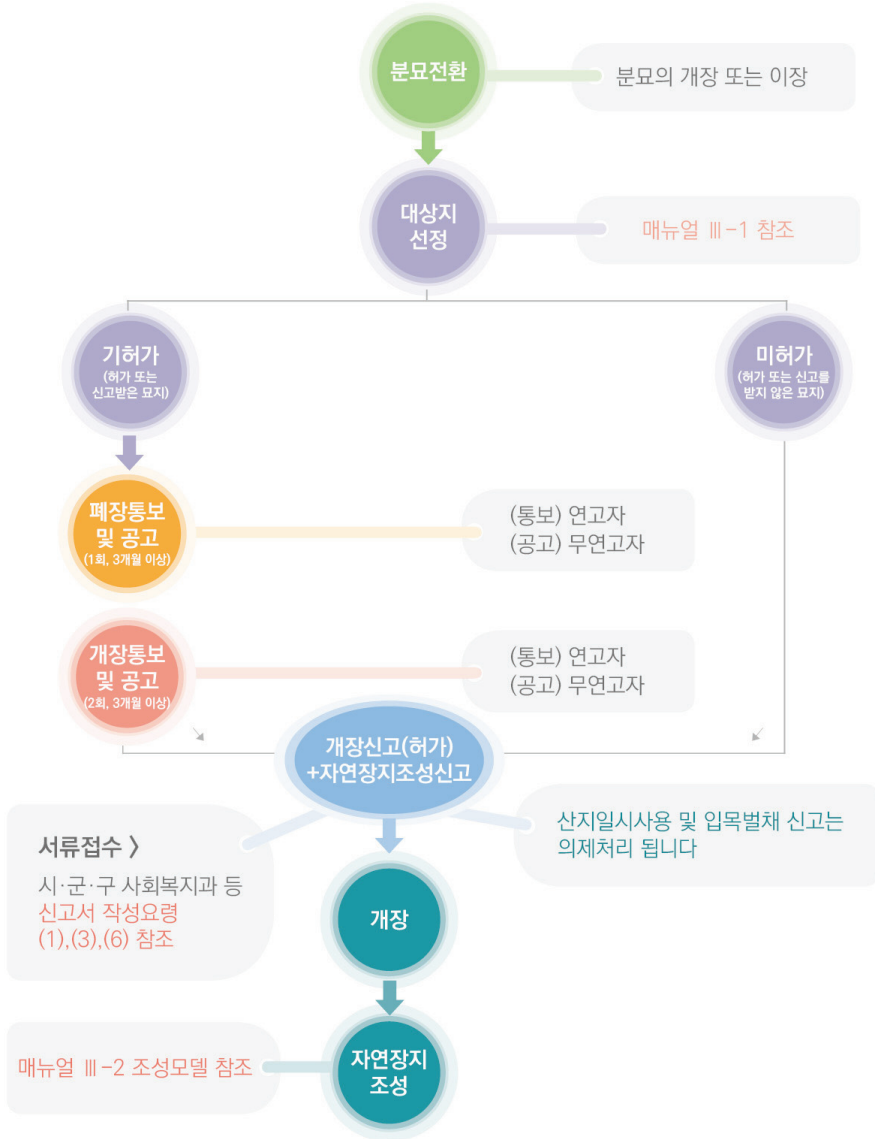
▶ 자연장지의 신고 서류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등 장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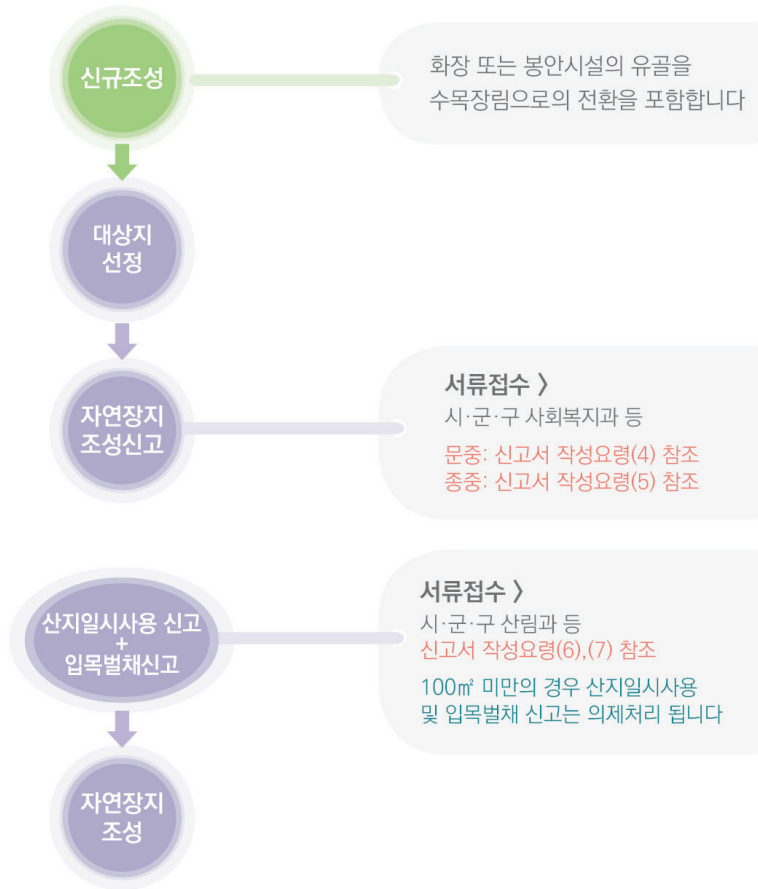
나.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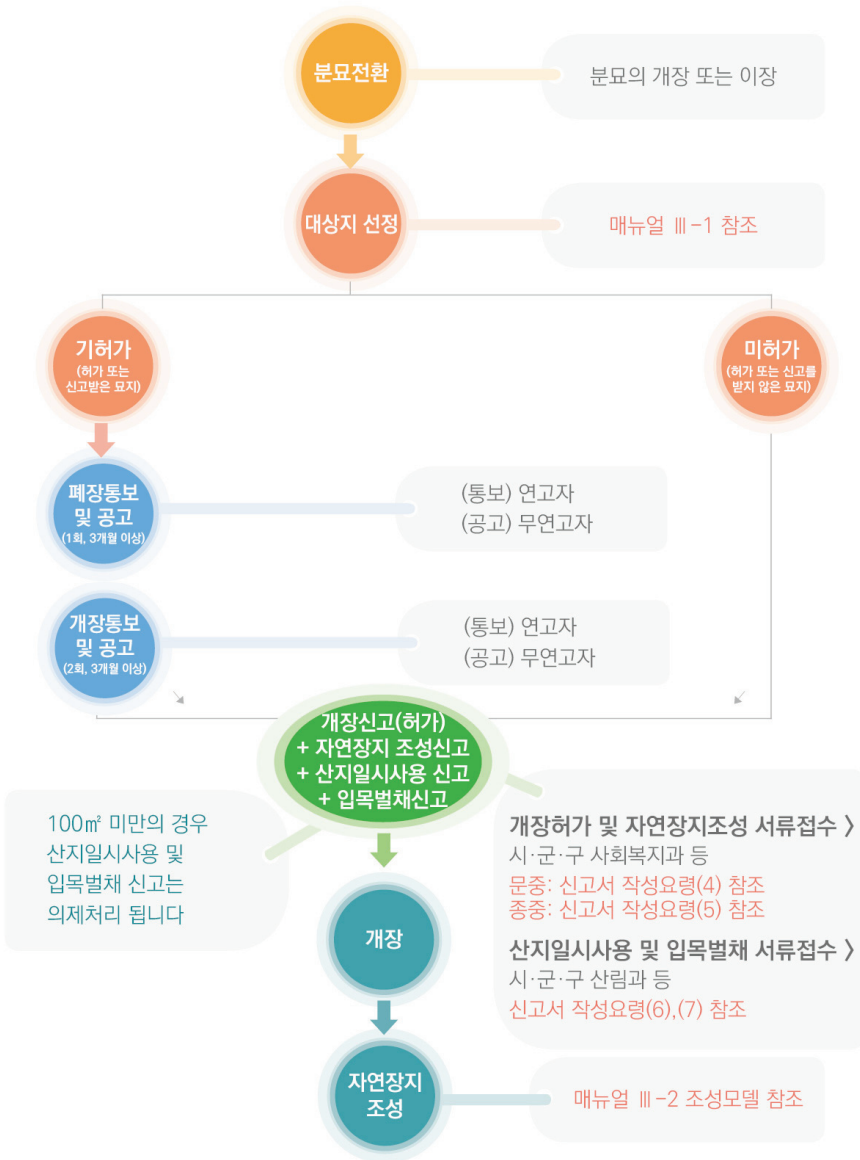
▶ 자연장지의 신고 서류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등 장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합니다



다. 종중·문중



▶ 자연장지의 신고 서류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등 장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합니다



2.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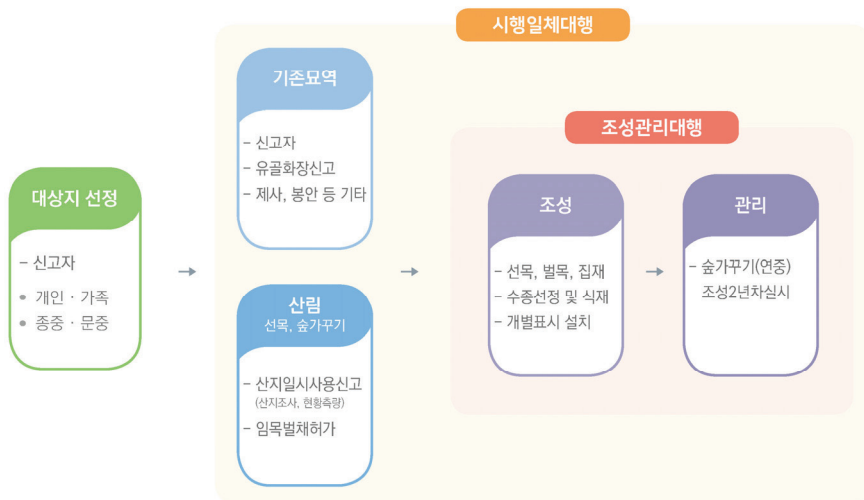
- 조성하려는 신고인이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 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가 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면도 2.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종 중 · 문 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위탁대행

- 자연장지의 조성은 조성자(신고인)가 각종 서류의 접수 및 조성을 하여야하나, 아래와 같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장림**은 “산림사업”입니다.



- 산림사업시행업자 : 산림사업시행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
 - ①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② 국유림영리단
 - ③ 산림사업법인
 - ④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소규모 산림형
수목장림 조성 매뉴얼

CHAPTER III

조성 모델

Ⅲ. 조성 모델

1. 대상지선정

가. 지리적 조건

1) 접근성

- 이용객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차량으로 이동시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2) 도로조건

- 마을 농로나 임도 등 조성에 따른 수목운반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곳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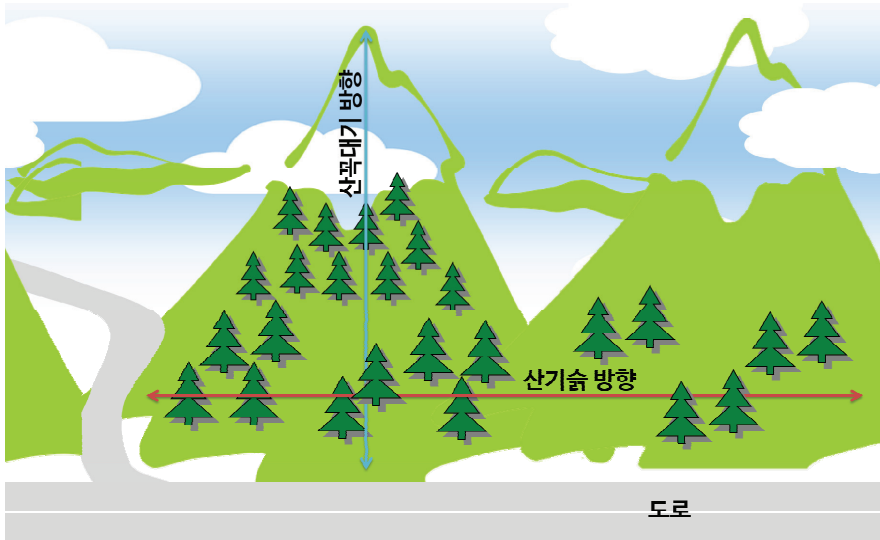
나. 입지적 조건

1) 면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가족은 100㎡ 미만, 종중·문중의 경우는 2,000㎡ 이하로 자연장지의 조성가능한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지형

- 지형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며, 지형의 표고차가 적은 완만한 곳이 좋습니다.
- 접근성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산꼭대기방향이 긴 형태보다는 산기슭 방향으로 긴 형태로 조성 가능한 곳이 적정합니다.



3) 방위

- 선호도나 전통사상 등을 고려할 때 산의 경사를 기준으로 남향, 남서향, 남동향이 좋습니다.

4) 경사

- 대상지의 경사는 25° 이하인 곳이 좋습니다.

5) 조망권

- 전망이 탁 트여 있어 조망권이 확보되는 곳이 좋습니다.

6) 토질 및 토심

- 수목장림의 토질은 배수와 물빠짐이 잘되는 사질양토, 양토, 마사토가 있는 토질이 좋으며, 화장한 골분을 묻게 되므로 토심은 최소 0.8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임상별 조건

수목장림 대상지의 수목 임령은 20~40년생 이상이 골고루 분포한 숲으로 병해충·산사태 등 재해피해가 적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단순림 보다는 혼효림이 좋습니다.

- * 임상별 조건은 신규 수목장림 조성시 기존 산림의 임목을 활용하는 ‘수목활용형’에만 해당합니다.
- 침엽수와 활엽수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30년생 이상의 수목이 60% 이상인 지역이 좋습니다.
- 추모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목이 개인·가족은 5본 이상, 문중·종중은 100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잣나무·소나무 임상〉



〈활엽수 임상〉

라. 민원 및 기타사항

1) 민원 우려

- 골분으로 인한 지하수 및 수계 등의 오염, 님비 현상과 혐오시설 인식에 따른 주변 마을 및 지역 주민간의 갈등 요인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화학시험연구원 : 화장된 분골의 유해성 시험결과 인체에 무해(2001)

2) 토지의 사용권

- 반드시 조성자의 토지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하여야 합니다.

2. 조성 모델

가. 대상지 여건에 따른 모델분류

구분	대상지 여건	적용모델
개인 · 가족	산림에 조성을 하는 경우로 입목이 양호하여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수목을 추모목으로 활용	수목활용형
	산림에 조성을 하되 입목이 불량하여 불가피하게 수목식재 후 추모목으로 활용	수목식재형
	기존에 조성된 묘지를 수목장림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봉분을 제거하고 나서 수목식재 후 추모목으로 활용	분묘전환형

구분	대상지 여건	적용모델
종중 · 문중	종중 또는 문중 소유의 산림에 조성을 하는 경우로 입목이 양호하여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수목을 추모목으로 활용	수목활용형
	종중 또는 문중 소유의 산림에 조성을 하되 입목이 불량하여 불가피하게 수목식재 후 추모목으로 활용	수목식재형
	기존에 조성된 묘지를 수목장림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봉분을 제거하고 나서 수목식재 후 추모목으로 활용	묘지전환형
	기존에 조성된 묘지가 산림과 연접한 경우로써 자생하는 양호한 수목과 일부 봉분을 제거하고 식재한 수목을 병행하여 추모목을 활용	산림연계형



식재수목형 (예시 : 무입목지 > 개간임야 > 산불피해지)



묘지전환형(예시)



산림연계형(예시)

- 제시된 모델은 조성 가능한 주변여건과 입목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성자 (개인·가족 또는 종중·문중)는 지적 및 산림현황 등 현지 상황에 맞도록 변형이 가능합니다.

구분	모델명	모델면적	조성방안	적정 본수	모델이미지
개인 · 가족	수목활용형	100㎡ 미만	기존수목을 추모목으로 활용	5본	
	수목식재형		추모목 식재	8본	
	분묘전환형		분묘 제거 후 추모목 식재	8본	
종중 · 문중	수목활용형	2,000㎡ 이하	기존수목을 추모목으로 활용	100본	
	수목식재형		추모목 식재	160본	
	묘지전환형		분묘 제거 후 추모목 식재	160본	
	산림연계형		분묘제거 후 기존수목활용 + 추모목 식재	100본+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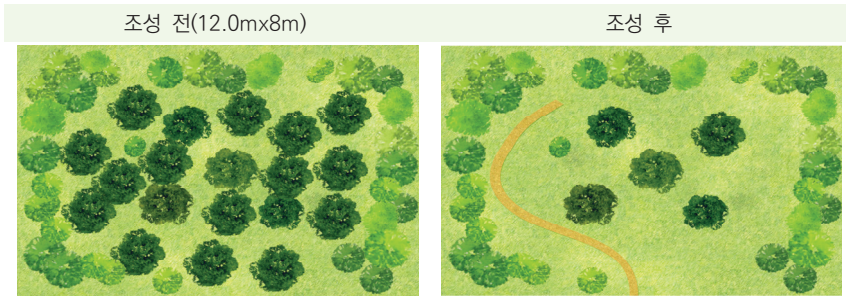
*** 수목활용형의 최소 잔존본수**

대상지 내 자생하고 있는 입목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경우 불량목제거 및 수종갱신 등 기존수목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최소 50% 이상 기존 수목을 활용하여 조성

- 개인·가족 : 3본 이상
- 종중·문중 : 50본 이상

나. 개인·가족 - 수목활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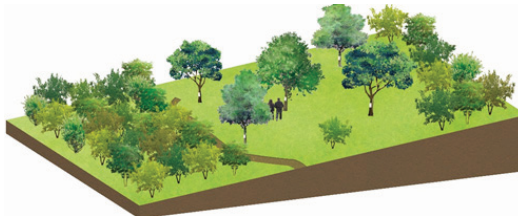
- 산림에 조성을 하는 경우로 입목이 양호하여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수목을 추모목으로 활용하기 위해 100㎡ 미만 내에 필요시 벌채를 시행하여 5분 이상을 잔존시키는 방법입니다.



조성(벌채) 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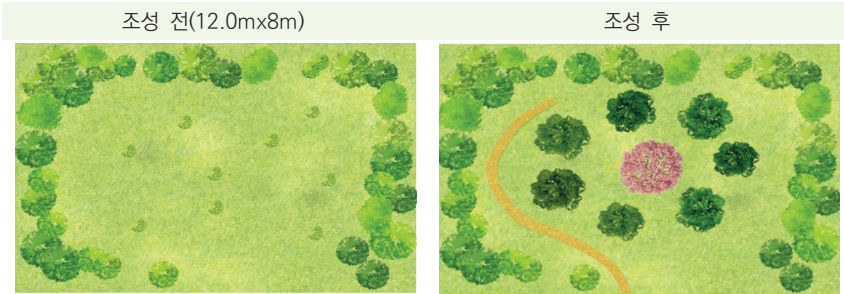
조성(벌채) 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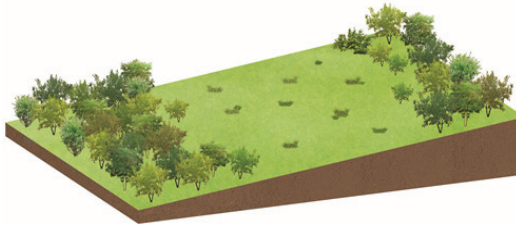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로서 기존 입목 및 식재여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개인·가족 - 수목식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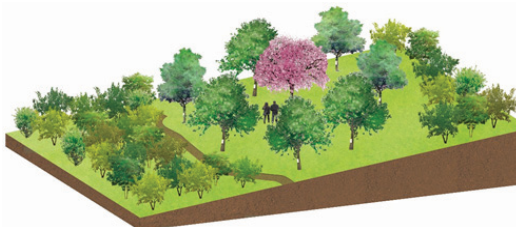
- 산림 내 추모목으로 활용할 입목이 없거나 입목이 불량한 경우 수목을 식재하여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조성(식재) 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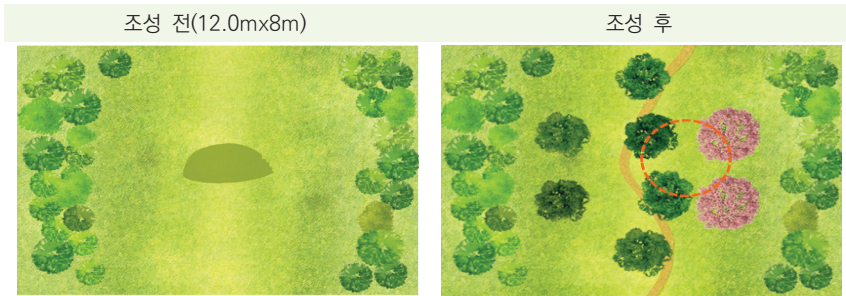
조성(식재) 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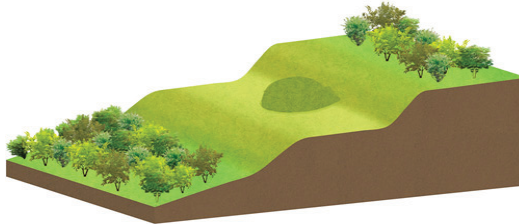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로써 기존 입목 및 식재여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라. 개인·가족 - 묘지전환형

- 기존 묘지의 봉분제거하고 매장된 시신을 수습(화장)하여 제거한 봉분을 수목 식재로 복구하여 자연장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조성(분묘 개정) 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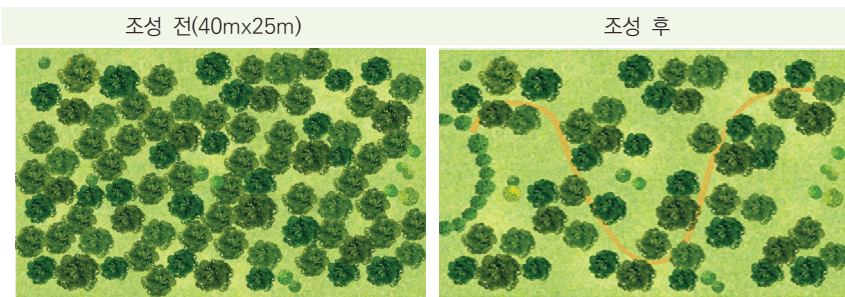
조성(분묘 개정 및 식재) 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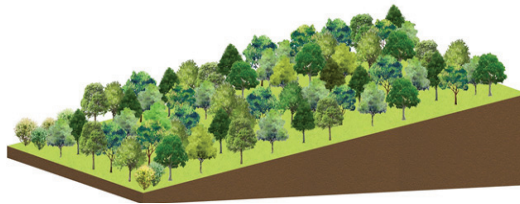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로써 기존 입목 및 식재여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마. 종중·문중 - 수목활용형

- 산림에 조성을 하는 경우로 입목이 양호하여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수목을 추모목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시 벌채를 시행하여 20㎡(약 4.5m×4.5m) 당 1주의 수목을 잔존시켜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500㎡ = 25본 이상, 1,000㎡ = 50본 이상, 2,000㎡ = 100본 이상)



조성(벌채) 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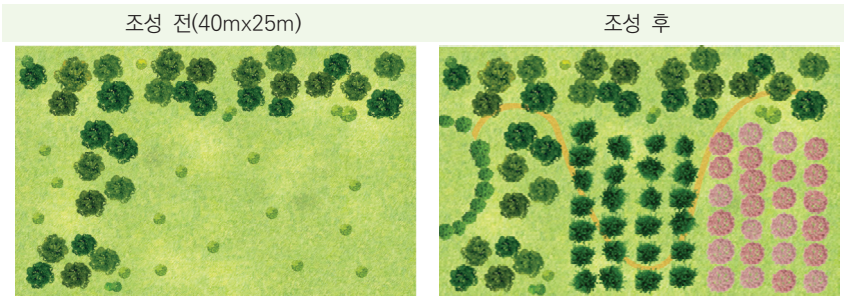
조성(벌채) 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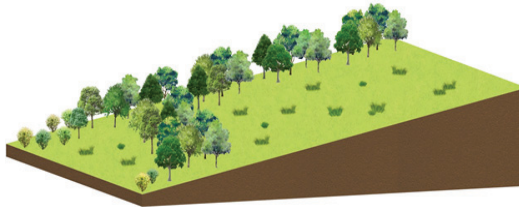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로써 기존 입목 및 식재여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바. 종중·문중 - 수목식재형

- 산림 내 추모목으로 활용할 입목이 없거나 입목이 불량한 경우 수목을 식재하여 조성하는 방법으로 20㎡(약 4.5m×4.5m) 당 1주의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성(식재) 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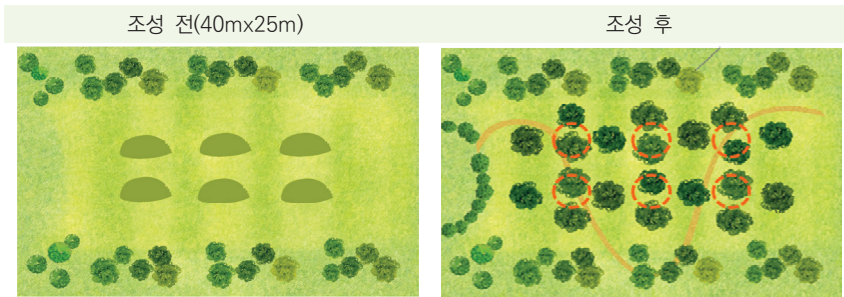
조성(식재) 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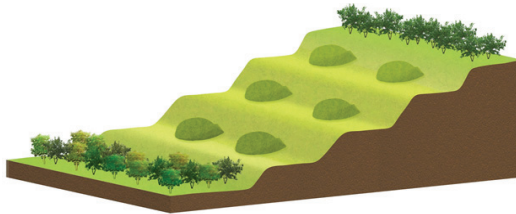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로써 기존 입목 및 식재여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종중 · 문중 - 묘지전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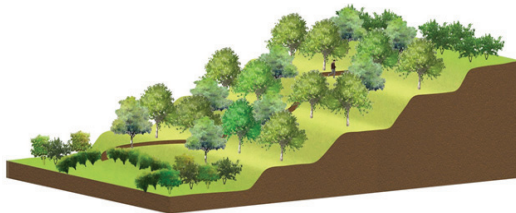
- 기존 묘지의 봉분제거하고 매장된 시신을 수습(화장)하여 제거한 봉분을 수목 식재로 복구하여 자연장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종중 및 문중의 동의가 선행된 상태에서 조성하여야 합니다.



조성(분묘 개장) 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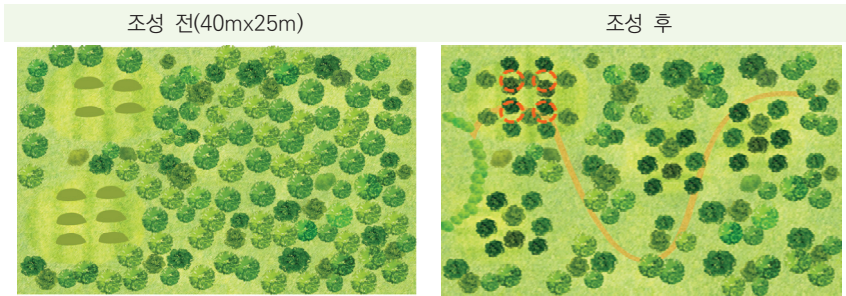
조성(분묘 개장 및 식재) 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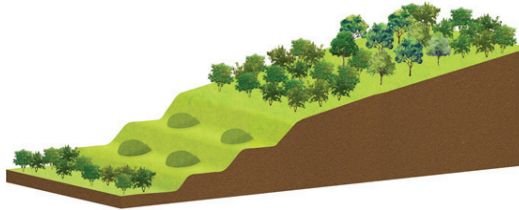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로써 기존 입목 및 식재여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종중·문중 - 산림연계형(군집형묘지+기존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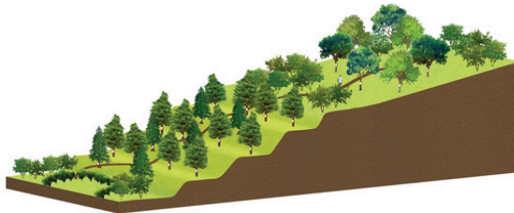
- 기존 군집되어 있는 묘지의 매장된 시신을 수습(화장)하고 제거한 봉분을 수목 식재하여 연결한 산림의 양호한 입목과 함께 추모목으로 활용하여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조성(분묘개장 및 벌채) 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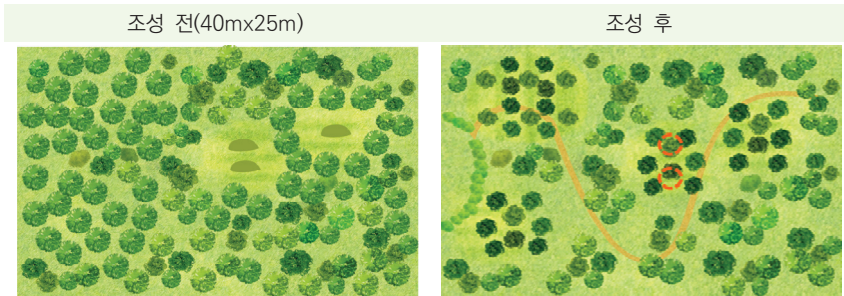
조성(분묘개장 및 벌채) 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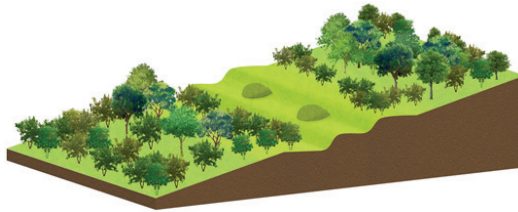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로써 기존 입목 및 식재여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종중·문중 - 산림연계형(분산형묘지+기존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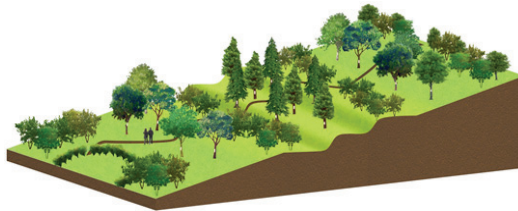
- 사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묘지의 매장된 시신을 수습(화장)하고 제거한 봉분을 수목 식재하여 연결한 산림의 양호한 입목과 함께 추모목으로 활용하여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조성(분묘개장 및 벌채) 전 입면도



조성(분묘개장 및 벌채) 후 입면도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로써 기존 입목 및 식재여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차. 소규모 수목장림 조성사례

• 사업 내용

유 형	가족	모 델 유 형	수목활용형
조 성 면 적	99㎡	추 모 목	소나무
산림복원 면적	778㎡	분 묘 개 장	5개
수목장림 위치	충남 서천군 마산면 시선리		
산림복원지 위치	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양리		
사 업 비	총 1,000만원(재단 800만원 / 자부담 200만원)		
식 재	수목장림 : 소나무, 맥문동 / 복구목 : 편백		
내 용	입지여건	4영급 이상의 소나무로 구성된 천연림으로 평균직경이 30cm 이상이며 주변에는 탐시마을이 인접하고 있음	
	조성과정	숲가꾸기 시행으로 존치된 임목을 추모목으로 선정하고, 부여에 위치한 기존의 집단화된 분묘 5기를 개장 후 이장함	
	특이사항	기존 임목(소나무)을 활용하여 조성하였으며, 하층의 잡목방지를 위하여 맥문동을 식재함. 본 사업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수목장림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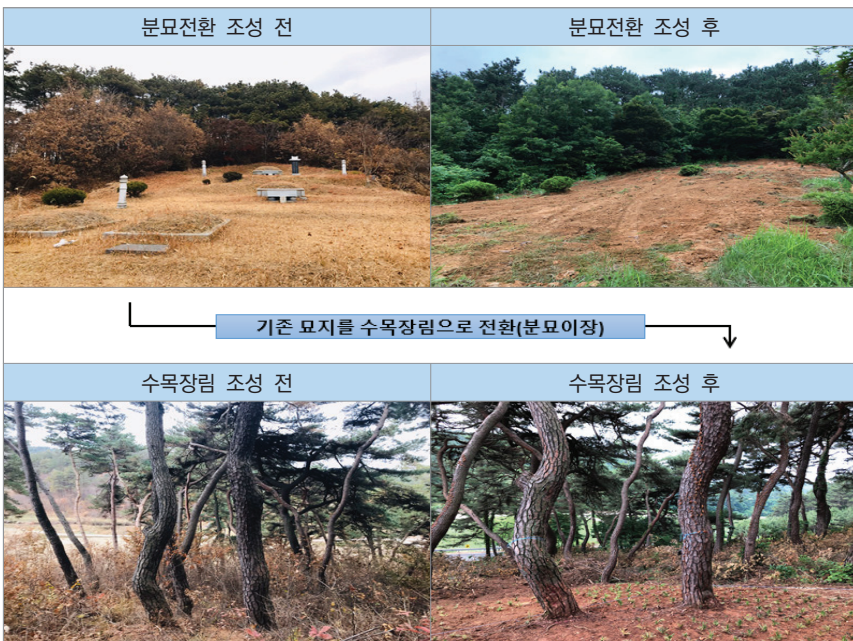
• 수목장림 조성 구역



• 위치도



• 수목장림 조성 전후 비교





소규모 산림형
수목장림 조성 매뉴얼

CHAPTER IV

추모목 선정

IV. 추모목 선정

1. 추모목의 선정 기준

- 추모목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한 추모목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수종 선정이 가능합니다.
 - 기후에 맞도록 기후대별 수종 중에서 대표적인 수목을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 해당 산림의 구성 수목 종류 중 생장이 왕성하고 형질이 우수하며, 각종 병충해의 피해가 적은 수종이 좋습니다.
 - 수목운반을 위한 작업로 확보여부에 따라 식재수목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모목은 최소 2m 이상의 수목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 기후대별 목적별 주요수종

구 분		온대북부	온대중부	온대남부	난대
자생 수종	침엽수	젓나무, 소나무, 가문비나무 등	전나무, 소나무, 측백 등	주목, 해송, 편백 등	삼나무, 해송, 비자나무 등
	활엽수	신갈나무, 자작나무, 피나무 등	굴참나무, 거제수나무, 느티나무 등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등	후박나무, 녹나무, 황칠나무 등
단풍관상		복자기, 은행나무, 참나무류 등	청단풍나무, 복자기, 참나무류 등	홍단풍나무, 고로쇠나무, 은행나무 등	단풍나무, 복자기 등
꽃		산딸나무, 층층나무, 목련 등	산벚나무, 귀룽나무, 이팝나무 등	산수유, 배롱나무, 생강나무 등	동백나무, 배롱나무 등
열매		보리수나무, 팔배나무 등	모과나무, 호두나무 등	모과나무, 호두나무 등	먼나무, 녹나무 등
잎, 수형		음나무, 가래나무 등	회화나무, 황벽나무, 느티나무 등	계수나무, 노각나무, 팽나무 등	계수나무, 노각나무, 황칠나무 등

• 기후대별 지역구분

기후대	도 시 현 황	
온대 북부지역	경기북부 일부와 강원도의 산지	
온대 중부지역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일부와 충청북도,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강원도 저지대	
온대 남부지역	고산지대를 제외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서해안 일대와 난대 지역을 제외한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부	
난대 지역	남해안지역의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저지대와 제주도의 해안가의 산지대	

2. 주요 추모목(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



<소나무>



<잣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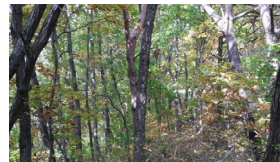
<굴참나무>



<충청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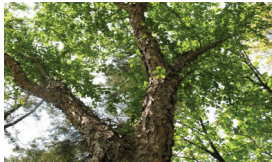
<산벚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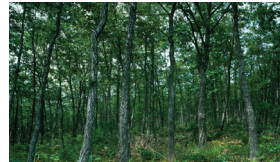
<떡갈나무>



<밤나무>



<물박달나무>



<신갈나무>



소규모 산림형
수목장림 조성 매뉴얼

CHAPTER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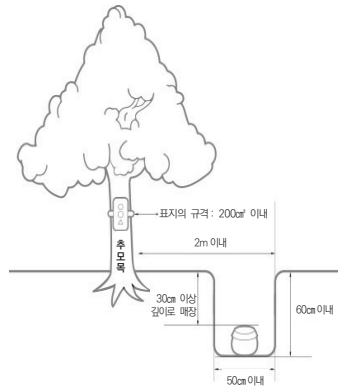
유지 및 관리

V. 유지 및 관리

1. 수목장 절차

가. 골분의 안치

- 골분의 안치는 추모목의 위치·지형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되 추모목에서 2.0m 이내에 매장을 합니다.
- 안치한 구덩이는 너비 50cm, 깊이 60cm 이내가 적당합니다.
- 용기로 안치할 경우에는 사용한 용기의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 골분을 안치한 후에는 반드시 되메우기를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실시하며, 우기에 표토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 수목장의 절차



2. 표지(명패)설치 기준

- 추모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추모목 1그루에 다수의 고인을 모실 경우에도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설치방법은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합니다.
- 표지의 재질은 자연친화적인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필요시 그 밖의 재질도 이용 가능합니다.
- 표지의 규격은 200cm²(10×20cm)이내로 하여야 하며 눈높이(1.5m) 정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표지에는 고인의 이름, 출생 및 사망일 및 그 밖의 추가 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편의시설(선택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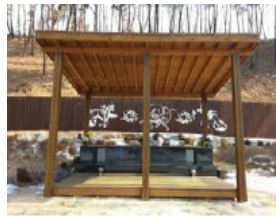
- 편의시설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하고자하는 편의시설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보행로>



<쉼터>









<공동분향단>

4. 유지 및 관리

가. 숲가꾸기

-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유지·증진 등 산림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충족 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숲가꾸기를 실시합니다.
- 보존해야할 추모목과 주변의 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최대한 보존·활용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 ▶ 초기에는 추모목의 빠른 활착을 위하여 생육촉진을 위해 비료공급 및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
 - ▶ 수목장림은 주변 하층식생이 적어 풀베기가 수월하며, 벌초 등 묘지보다 불편이 적습니다.
 - ▶ 식재 3년차(기존 입목은 조성시) 수목은 수형관리 및 가지치기 등을 실시합니다.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시 비												

1) 풀베기(하층관리)

- ▶ 수목장림의 쾌적한 숲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야생초화류, 철쭉 및 소관목류의 화목류는 존치하고 나머지는 제거합니다.
- ▶ 존치된 소관목류도 생육조건에 맞게 가꾸어 하층의 투시성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 ▶ 풀베기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2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우드칩, 콩자갈 등으로 잡초의 발생 예방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2) 가지치기

- ▶ 수목장림의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에만 해당합니다.
- ▶ 가지치기는 전체 수목높이의 60%까지 실행하여 수관사이로 자연광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실시하며, 작업 후 남은 지조물은 수목장림 밖으로 반출합니다.

3) 덩굴제거

- ▶ 칩, 담쟁이 등 수목의 생육에 악영향을 주는 덩굴류는 제거하고 작업부산물은 전량 밖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4) 어린나무가꾸기

- ▶ 추모목 식재 후 수목장림에 침입한 유해수종(아까시, 개암나무, 옷나무 및 만경류 등)을 제거합니다.
- ▶ 병충해목, 훼손되거나 생장이 불량나무, 초두부가 갈라진 나무, 분지목 등을 제거합니다.

5) 전정

- ▶ 추모목의 수형적 미관을 위하여 윗부분은 강하게 아래부분은 약하게 전정합니다.
- ▶ 전체를 충분히 관찰하여 수형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무성하게 자란 가지, 도장지부터 실시합니다.
- ▶ 전정의 시기는 수종의 생육 및 개화패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상록침엽수) 10~11월 (상록활엽수) 5~9월, 9~10월 (낙엽활엽수) 7~8월, 11~3월
- * 전정하지 않는 수종 : 동백, 녹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목련, 참나무류 등

6) 시비

▶ 기비(밑거름)

유기질 비료를 늦가을 낙엽 후 땅이 얼기 전(10월 하순~11월 하순) 또는 잎피기 전 (2월 하순~3월 하순)에 연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 추비(덧거름)

화학비료를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에 1회 시비합니다.

▶ 이식한 수목, 수세가 쇠약해진 수목은 엽면시비, 영양제 수간주사를 시비하여 빠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수종과 크기를 고려하여 비료의 종류와 시비량 및 시비횟수를 결정합니다.

구 분	시비기준			
	비료의 종류		1회 시비량 및 유형	시비횟수
관목, 소교목	유기질비료		5kg/주(기비)	1회/년
	화학비료	질소(N)	10kg/㎡(추비)	1회/년
		인산(P2O5)	10kg/㎡(추비)	1회/2년
		칼리(K2O)	20kg/㎡(추비)	1회/2년
중교목 (H2.0~4.0m)	유기질비료		10kg/주(기비)	1회
	화학비료	질소(N)	10kg/㎡(추비)	1회/년
		인산(P2O5)	10kg/㎡(추비)	1회/2년
		칼리(K2O)	20kg/㎡(추비)	1회/2년
대교목 (H4.0m 이상)	유기질비료		20kg/주(기비)	1회
	화학비료	질소(N)	10kg/㎡(추비)	1회/년
		인산(P2O5)	10kg/㎡(추비)	1회/2년
		칼리(K2O)	20kg/㎡(추비)	1회/2년

나. 병충해 방제

- 수목장림의 병충해 방제는 예방방제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 병충해 발생시에는 약제를 추가 살포합니다.
- 방제 전 사전 예찰을 실시하여 피해수준과 발생정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 방제의 수준은 완전 박멸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해 수준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추모목을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기적인 제초제, 방충제 및 생육촉진제 등의 살포, 분무 등으로 해충이나 기후 변화에 의한 수목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므로 조성을 담당했던 기술자 및 그 밖에 전문가에 의한 관리를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 산불관리

- 수목장림 내의 임상은 혼효림이 산불에 유리하며, 활엽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하층에 내화수종을 추가로 식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목장림 외연부에는 내화성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요내화성 수종

온 대	교 목 성	은행나무, 참나무류, 느티나무, 황벽나무, 백합나무, 아까시나무 등
	아교목성	마가목 등
	관 목 성	사철나무, 탕자나무 등
난 대	교 목 성	녹나무, 후박나무, 먼나무 등
	아교목성	아왜나무, 굴거리나무, 동백류 등
	관 목 성	팔손이, 광광나무 등

라. 산사태관리

- 대상지선정시 지반붕괴, 토양침식, 토사유입 등 산사태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묘지(분묘) 전환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훼손한 지역은 경관유지 및 재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사방공법을 적용하여 조성해야 합니다.
- 나무부리가 다층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참나무류, 소나무 등 심근성 수종과 함께 전나무, 단풍나무류 등의 중근성, 향나무, 삼나무 등의 천근성 수종을 혼합하여 식재할 수 있습니다.

부 록

- 설치기준 48
 - 1.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48
 - 2.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 49

- 신고서 작성요령(작성 예시)··· 50
 - 1. 개장 신고서 50
 - 2. 개인 자연장지 신고서 51
 - 3. 가족 자연장지 신고서 55
 - 4. 문중 자연장지 신고서 59
 - 5. 종중 자연장지 신고서 60
 - 6.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64
 - 7.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65

■ 설치기준

1.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가. 개인·가족자연장지

- 1) 개인·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개인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2)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3)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나. 종중·문중자연장지

- 1)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2)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2)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3) 표지는 수목 1그룹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4)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 1)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3) 표지는 수목 1그룹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4)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 신고서 작성요령(작성 예시)

1. 개장 신고서

신고서 작성요령(1)

개 장 [] 신고서
 []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개장신고: 2일 · 개장허가: 3일	
사망자	성 명	홍 상 직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망연월일 2017.07.03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 390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2017.07.07
	개장장소	상 동	개장방법 (매장·화장등)	<input type="checkbox"/>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매장 <input type="checkbox"/> 봉안 → 매장
	개장의 사유	자연장지로 변경	매장(봉안)기간	2017.07.07. ~ 2019.07.26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망자와의 관계 자
	주 소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0	전화번호 000-000-00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

2019년 07월 20일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준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의 경우	1. 기준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묘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 장 [] 신고증명서 [] 허가증					
사망자	성 명	홍 상 직	사망연월일	2017.07.03.	
	묘 지 또 는 봉 안 된 장 소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 390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2017.07.07
	개 장 장 소	상 동	개 장 방 법	[] 매장 [√]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망자와의 관계	자
	주 소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0	전화번호	000-000-00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2. 개인 자연장지 신고서

신고서 작성요령(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8. 30.]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일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①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 390		②지 목	임야
③면 적	60㎡		④조성연월일	2019. 07. 07.
⑤자연장 형태	[]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⑥조성변경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면적 []조성·관리인		
⑦사망자	성 명	홍상직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0	사망연월일	2019.07.03
⑧조성자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0	사망자와의 관계	자
⑨관리자	성 명	홍귀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0	사망자와의 관계	자
⑩신고인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0	사망자와의 관계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를 합니다.

2019년 월 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제 호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①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 390			
②면 적	60㎡	조성(변경)연월일	2019. 07. 07.	
③조성(변경) 내용	수목장림 조성			
④사망자	성 명	홍상직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⑤신고인	주 소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0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000-000-00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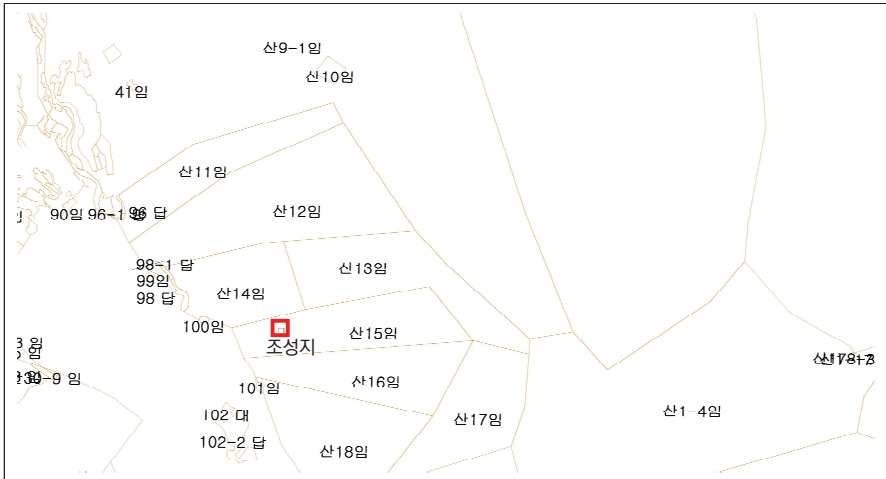
- ①, ⑪ 소재지 : 산림형 수목장림이 조성되는 장지의 주소
- ② 지 목 : 산림형 수목장림이 조성되는 장지의 지목
 - 임야 : 수목장림
 - 임야 외(전, 답, 과수원, 묘지 등): 수목형 자연장지
- ③, ⑫ 면 적 : 산림형 수목장림이 조성되는 장지의 면적(100㎡이내)
- ④ 조성연월일 : 조성한 연월일 작성(개인은 사후 신고)
- ⑤ 자연장 형태 : 산림형 수목장림을 조성하므로 수목 또는 수목장림을 선택
 - 임야 : 수목장림(수목장림) 선택
 - 임야 외(전, 답, 과수원, 묘지 등): 수목(수목형자연장지) 선택
- ⑥ 조성변경 : 면적 및 조성인 또는 관리인 변경시 작성(신규조성은 미 작성)
- ⑦, ⑭ 사망자 : 산림형 수목장림에 모시는 고인(주소는 생 전 거주지 주소 작성)
- ⑧ 조성자 : 산림형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자(고인의 형제자매, 자손 등)
- ⑨ 관리자 : 산림형 수목장림을 관리하는 자(고인의 형제자매, 자손 등)
- ⑩ 신고자 : 산림형 수목장림을 조성 신고자(고인의 형제자매, 자손 등)
- ⑬ 조성(변경)내용 : 자연장지의 조성내용 작성 예) 수목장림 조성 등
- ⑮ 신고인 : 산림형 수목장림을 조성 신고자(고인의 형제자매, 자손 등)

■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자연장지, 사망자, 조성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접수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검토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타법(산지관리법 등)상의 신고의무 여부 확인)	처리기관
결재	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관리대장등 작성	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적성(입력)	처리기관
수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 첨부서류



1) 평면도(예시)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예시)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시)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 토지 사용승낙서)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목	면적(㎡)	사 유		변 동 일 자	주 소			변 동 원 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5)임야	*1,831.050*	(20)1999년 11월 22일 분할되어 본면에 -5, -6을 포함		2007년 09월 03일 (05)성명(명칭)변경						3819
		--이하어백--							--이하어백--	
등 급 수 칭 연 월 일	1984년 07월 01일	1989년 05월 01일	수령							
토 지 등 급 (기준수확량등급)	4	10								
개발공시지가기준일	2010년 01월 01일	2011년 01월 01일	2012년 01월 01일	2013년 01월 01일	2014년 01월 01일	2015년 01월 01일	2016년 01월 01일	용도지역 등		
개발공시지가(원/㎡)	156	214	267	294	321	361	414			
500원 2016.07.14				 임야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16년 07월 14일 						

3. 가족 자연장지 신고서

신고서 작성요령(3)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①명칭	홍씨 가족수목장림			
②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 390		③지목	임야
④면적	98㎡			
⑤조성연월일	2019.07.07			
⑥자연장 형태	[]수목	[]화초	[]잔디	[√]수목장림 []기타
⑦조성변경	조성변경연월일			
	조성변경사유 []면적 []표지 []조성·관리인 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⑧조성자	성명/홍길동	생년월일 0000.00.00		
	주소/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0	자택 전화번호/000-000-0000		
⑨관리인	성명/홍귀동	생년월일 0000.00.00		
	주소/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0	전화번호 000-000-0000		
⑩신고인	성명/홍길동	생년월일 0000.00.00		
	주소/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0	전화번호 000-000-00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3항에 따라 (수목장림)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를 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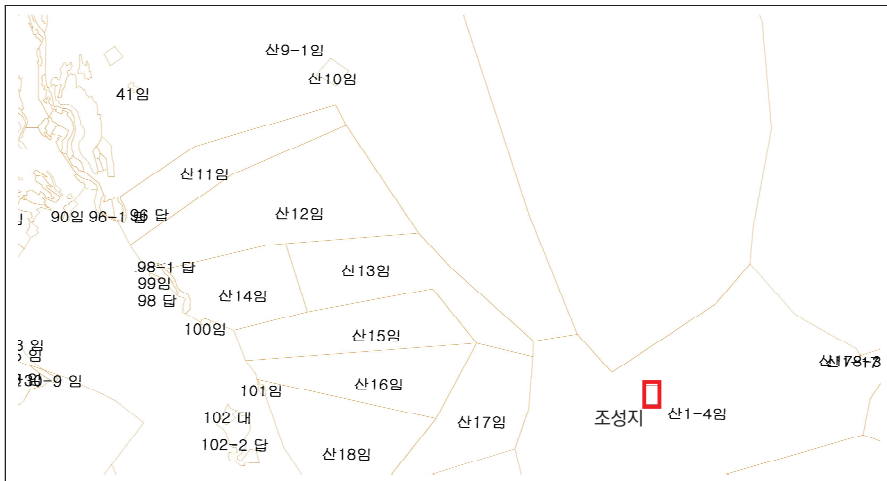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가족 자연 장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면도 2.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종중· 문중 자연 장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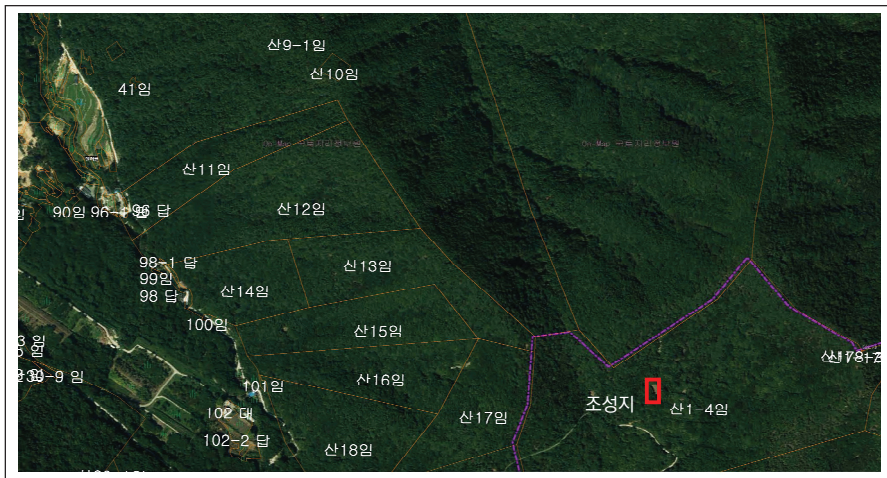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첨부서류



1) 평면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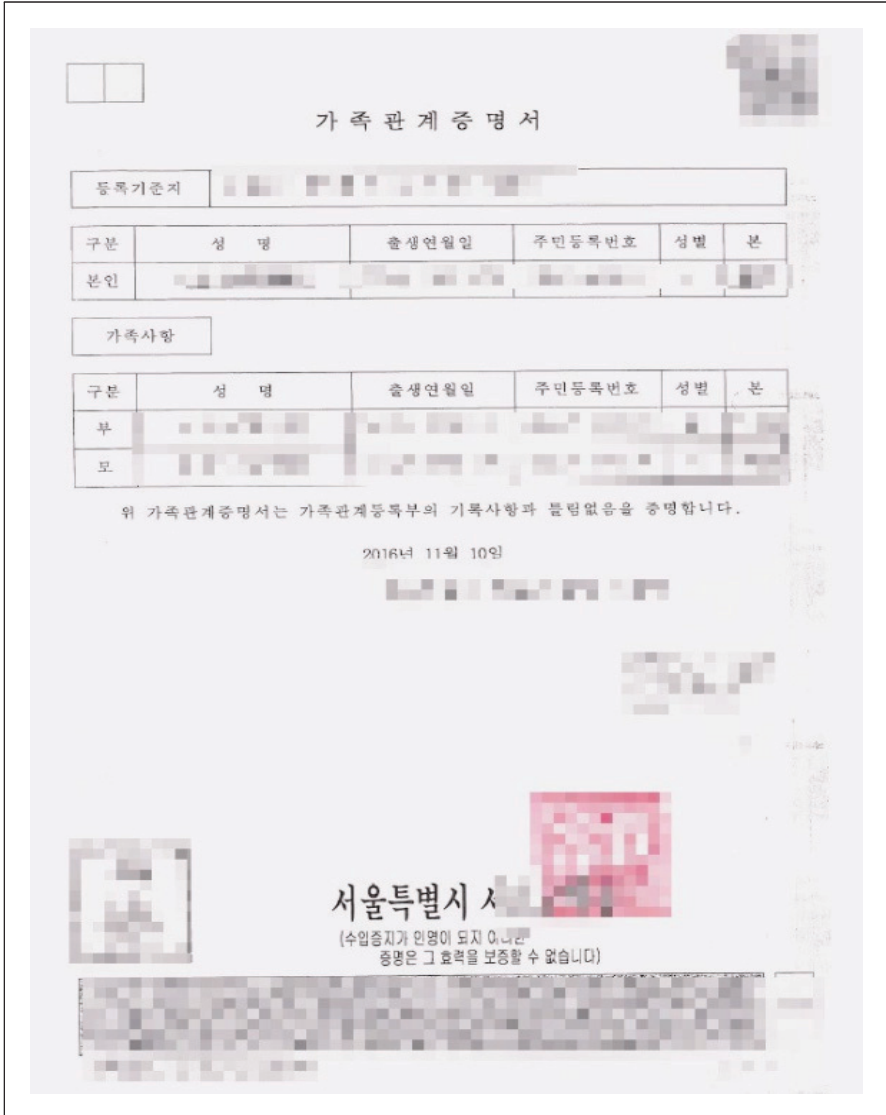
2) 가족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예시)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시)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토지 사용승낙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고유번호</td><td>4827035032-20046-0000</td></tr> <tr><td>토지소재</td><td></td></tr> <tr><td>지번</td><td>산</td></tr> <tr><td>축척</td><td>1:6000</td></tr> </table>	고유번호	4827035032-20046-0000	토지소재		지번	산	축척	1:6000	임야대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도면번호</td><td>1</td><td>발급번호</td><td>201648270000214283</td></tr> <tr><td>장번호</td><td>1-1</td><td>자리시각</td><td>10시37분53초</td></tr> <tr><td>비고</td><td></td><td>작성자</td><td></td></tr> </table>	도면번호	1	발급번호	201648270000214283	장번호	1-1	자리시각	10시37분53초	비고		작성자	
고유번호	4827035032-20046-0000																					
토지소재																						
지번	산																					
축척	1:6000																					
도면번호	1	발급번호	201648270000214283																			
장번호	1-1	자리시각	10시37분53초																			
비고		작성자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목	면적(㎡)	사 유	변 동 일 자	주 소	변 동 원 인	성 명 또는 명 칭	등록번호															
(05)임야	*1,831.050*	(20)1999년 11월 22일 분할되어 본번에 -5, -6을 부합	2007년 09월 03일 (05)성명(병칭)변경				3819															
		--이하어백--				--이하어백--																
통급수정 연월일	1984년 07월 01일 수경	1989년 05월 01일 수경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4	10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0년 01월 01일	2011년 01월 01일	2012년 01월 01일	2013년 01월 01일	2014년 01월 01일	2015년 01월 01일	2016년 01월 01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156	214	267	294	321	361	414															
500원 2016.07.14				임야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16년 07월 14일				시장 														

4) 가족관계증명서



4. 문중 자연장지 신고서

신고서 작성요령(4)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①명칭	홍씨 문중수목장림			
②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 390		③지목	묘지
④면적	1,000㎡			
⑤조성연월일	2019.07.07			
⑥자연장 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수목 [<input type="checkbox"/>]화초 [<input type="checkbox"/>]잔디 [<input type="checkbox"/>]수목장림 [<input type="checkbox"/>]기타			
⑦조성변경	조성변경연월일			
	조성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면적 [<input type="checkbox"/>]표지 [<input type="checkbox"/>]조성·관리인 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⑧조성자	성명/홍씨문중		생년월일 (생략)	
	주소/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0		자택 전화번호/000-000-0000(문중번호)	
⑨관리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00.00	
	주소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5		전화번호 000-000-0000	
⑩신고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00.00	
	주소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6		전화번호 000-000-00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3항에 따라 (수목장림)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를 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가족 자연장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면도 2.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종중·문중 자연장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입야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 종종 자연장지 신고서

신고서 작성요령(5)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①명칭	홍씨 종종수목장림			
②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 391	③지목	임야	
④면적	2,000㎡			
⑤조성연월일	2019.07.07			
⑥자연장 형태	[]수목 []화초 []잔디 [<input checked="" type="checkbox"/>]수목장림 []기타			
⑦조성변경	조성변경연월일			
	조성변경사유 []면적 []표지 []조성·관리인 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⑧조성자	성명/ 홍씨종중		생년월일 (생략)	
	주소/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0		자택 전화번호/ 000-000-0000(종중번호)	
⑨관리인	성명 홍귀동		생년월일 0000.00.00	
	주소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5		전화번호 000-000-0000	
⑩신고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00.00	
	주소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6		전화번호 000-000-00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3항에 따라 (수목장림)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를 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가족 자연장지	1. 평면도 2.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종중·문중 자연장지	1. 종종·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동의 또는 종종·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종·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종·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족·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서 용어설명

- ① 명 칭 : 조성하는 가족·종중·문중 자연장지의 명칭 예) 홍씨 가족·문중·종중수목장림
- ② 소재지 : 가족·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되는 장지의 주소
- ③ 지 목 : 가족·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되는 장지의 지목
 - 임야 : 수목장림
 - 임야 외(전, 답, 과수원, 묘지 등) : 수목형 자연장지
- ④ 면 적 : 가족·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되는 장지의 면적(가족100㎡종중·문중2000㎡이내)
- ⑤ 조성연월일 : 조성할 연월일 작성(종중은 사전 신고)
- ⑥ 자연장 형태 : 자연장지 조성시 수목 또는 수목장림을 선택
 - 임야 : 수목장림(수목장림) 선택
 - 임야 외(전, 답, 과수원, 묘지 등) : 수목(수목형자연장지) 선택
- ⑦ 조성변경 : 면적, 표지 및 조성인 또는 관리인 변경시 작성(신규조성은 미 작성)
- ⑧ 조성자 : 가족·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하는 가족·종중·문중명
- ⑨ 관리인 : 가족·종중·문중 자연장지를 관리할 자
- ⑩ 신고인 : 가족·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조성신고 가족·종중·문중의 대표자

■ 문중 산림형 수목장림 조성 신고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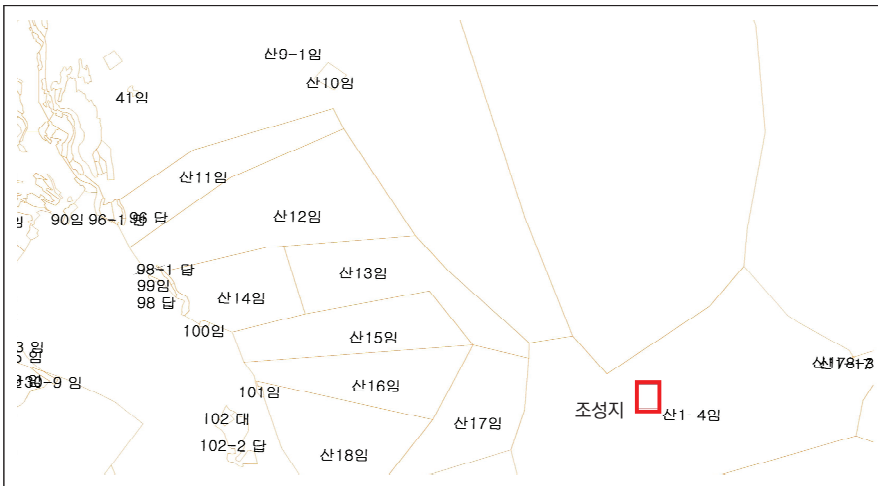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자연장지, 사망자, 조성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접 수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검토 및 현장실사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현장실사 - 제한지역, 조성 기준위반 여부	처리기관
이행통지	신청사항 이행통지교부	처리기관
이행여부확인	현장이행 확인	처리기관
결 재	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관리대장등 작성	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적성(입력)	처리기관
수 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 종중·문중 조성신고 첨부서류

1)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문중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지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고유번호		4827035032-20046-0000		도면번호		1		발급번호		20164827000214283	
토지소재				장 번호		1-1		처리시각		10시37분53초	
지 번		산		비 고				작성 지			
토 지 표 시		축 척		1:6000							
임야대장				소 유 자							
지목	면적(㎡)	사 유		변 동 일 자	주 소						
(05)임야	*1,831.0504	(20)1999년 11월 22일 분할되어 본면에 -5, -6을 부합		변 동 원 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이하이백---		(05)성명(명칭)변경	---이하이백---			3819			
등 록 연월일	1994년 07월 01일	1999년 09월 01일									
토 지 등 관 (기준수확량등급)	4	10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0년 01월 01일	2011년 01월 01일	2012년 01월 01일	2013년 01월 01일	2014년 01월 01일	2015년 01월 01일	2016년 01월 01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156	214	267	294	321	361	414				
500원		2016.07.14		공용		2016.07.14		M2504		2016년 07월 14일	
				임야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시장			

6.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신고서 작성요령(6)

산지일시사용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기간연장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기간연장신고서 5일
------	------	------	--------------------------

신고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00.00
	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6	전화번호 000-000-0000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00.00
	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96	전화번호 000-000-0000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준보전 산지
				계			1,000
장성. 황룡. 아곡	산391	임야	1,000	1,000			

일시사용 목적	수목장림 조성 또는 자연장지(수목형) 조성
------------	--------------------------------

일시사용 기간	당초(신규) 0000.00. ~ 0000. 00.	변경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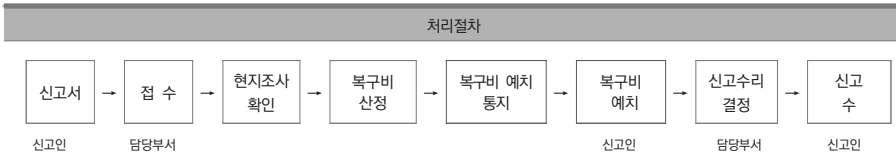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신고 [] 변경신고 [] 기간연장신고를 합니다.

2019 년 월 일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 입목벌채 신고서

신고서 작성요령(7)

(앞쪽)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 고 인	성명 <i>홍길동</i>	주민등록번호 <i>000000-0000000</i>				
	주소 <i>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 396</i>	전화번호 <i>000-000-0000</i>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소재지	<i>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390</i>					
지 적	<i>1,560</i> m ²	구역면적	<i>1,000</i> m ²	벌채 또는 굴취 면적	<i>750</i> m ²	
신 고 내 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i>벌채</i>	<i>간벌</i>	<i>수목장림 조성</i>	수종	수량(m ² ,본)	
				<i>참나무류</i>	<i>5.3m², 18본</i>	
벌 채 또는 굴 취 기 간	<i>0000. 00.~ 0000. 00.</i>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소규모 산림형 수목장림
조성 매뉴얼**

발행인 |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이사장 엄종호

발행처 |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2호
(둔산동 아너스빌)

전 화 | 042-719-4306

발행일 | 2021년 6월



Korea
Woodland
Burial
Foundation

